

## 참고자료 2.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용자 안내

### 자금지원조건

#### 1) 시설자금 (동일시설에 대한 중복지원은 불가함)

사 업 명		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	대 출 기 간	2006년도 1/4분기 이자율 (분기별 변동금리)	2006년도 지원금액 (백만원)
집단에너지 사업	지역냉난방사업	없 음	8년거치7년 분할상환	5.0%	185,624
	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				
	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				
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	자발적협약기업 투자사업	500억원 이내 (사업장당 250억원 이내)	3년거치5년 분할상환	3.75%	345,500
	에너지절약 시설설치사업	200억원 이내			
	산업체·건물 열병합발전사업				
	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				
	지역에너지 개발사업	200억원 이내 (사업장당 100억원 이내)	2년거치2년 분할상환	5.0%	123,775
	중소창업기업 지원사업	100억원 이내			
	수요관리 투자사업	50억원 이내			
	건물효율등급 인증지원사업	400억원 이내 (건설허가 사업장당 200억원 이내)	2년거치3년 분할상환	3.75%	654,899
	주택단열 개수사업	1주택당 3천만원 이내			
	ESCO 투자사업	200억원 이내 (동일투자지당)	5년거치5년 분할상환	3.75%	123,775
합 계					654,899

주) 이자율과 대출기간이 「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영요령」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「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영요령」의 규정에 따른다.

## 2) 운전자금(중소기업에 한함)

사업명	지원대상	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	대출기간	2006년도 1/4분기 이자율 (분기별 변동금리)
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	· 공단이 인증하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제조업체	10억원 이내	1년거치2년 분할상환	3.75%
	· ESCO			
	· 에너지절약전문투자조합이 투자한 창업기업			

주1) 동일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연 1회에 한한다. 다만, 운전자금 미상환 잔액이 있는 사업자는 제외한다.

주2) 운전자금은 해당사업의 시설자금의 지원 금액에 포함하여 운영한다.

### 자금지원대상자

사업명	자금지원대상자
I. 집단에너지사업	○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
II. 자발적협약기업 투자사업	○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의2에 의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자, 또는 동 협약의 기간이 완료되고 계속 협약에 참여하고자 참여의향서 및 해당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
III.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	○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열거된 에너지절약시설을 신·증설 또는 개체하고자 하는 자 (다만, 동 지침 적용년도 기준으로 전전년도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'자발적협약 참여의향서' 를 제출한 사업장에 한함)
IV. 산업체·건물 열병합 발전사업	○ 산업체·건물 열병합발전시설을 신·증설 또는 개체하고자 하는 자
V.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	○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고효율제품 등을 생산하는 자
VI. 지역에너지개발사업	○ 지역에너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(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한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함)
VII. 중소기업지원사업	○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
VIII. 수요관리투자사업	○ 자금지원세부내역에 열거된 수요관리시설을 신·증설 또는 개체하고자 하는 자
IX. 건물효율등급인증 지원사업	○ '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정' (산업자원부 고시)에 의하여 예비인증을 받은 자
X. 주택단열개수사업	○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단독주택의 소유자로서 단열시공을 하고자 하는 자
XI. ESCO투자사업	○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ESCO로 등록된 자 또는 에너지사용자로서 ESCO와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자

\*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([www.kemco.or.kr](http://www.kemco.or.kr)) 참조